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3호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호(2009.1.23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결정된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한 정정고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09년 2월 6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결정
정정고시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구역 지정조서 (변경 없음)

지정 구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기정	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	종로구 옥인동 47-64번지 외 257필지	30,428	-	30,428	

나. 정비계획 수립

1) 토지이용계획 (변경 없음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	30,428	-	30,428	100.0	
정비기 반 시 설	소 계	3,527	-	3,527	11.6	공원경계변경 (면적증감 없음)
	도 로	787	-	787	2.6	
	공 원	2,740	-	2,740	9.0	도시자연공원(경계변경) ±51.6㎡(1.4%)
택 지	소 계	26,901	-	26,901	88.4	
	택 지	26,901	-	26,901	88.4	공동주택부지 등

2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(변경 없음)

가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나)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 조서

결정 구분	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증(감)	변 경	
도시계획시설	변경	인왕산 도시자연 공원	도시 자연 공원	옥인동 47-512 일원	1,782,834.5 (2,004)	-	1,782,834.5 (2,004)	공원경계변경 (면적증감없음) ±51.6㎡
	기정	-	소공원①	신교동 6-30 일원	446	-	446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		-	소공원②	옥인동 47-228 일원	290	-	290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
3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(변경 없음)

4)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물의 정비·개량

가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
나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	위치	연면적 (㎡)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 (높이)
	명칭	면적 (㎡)	가구	획지	면적 (㎡)						
신규	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 비구역	30,428	I	I - I	26,901	옥인동 47-64번 지 일대	69,44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31% 이하	133% 이하	5층 이하 (20m)
건축물 용도		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기 정				변 경				
			○ 건설비율: 총 310세대 -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하: 250세대(80.6%) -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초과: 60세대(19.4%)				○ 건설비율: 총 300세대 -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하: 240세대(80%) -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초과: 60세대(20%)				
임대주택 건설비율			○ 건교부고시 제273호(2006.7.20)의 3-2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미만이거나,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○ 건축법 규정에 의거 본 구역 동측 도시계획도로(12m)에서 건축 한계선 3m 지정하여 보행통로 및 차량통로로 활용하는 계획 - 보행통로 : 잔디블럭을 기본으로 하되, 다목적 경계형블럭 사용하여 보행통로의 경사를 따라 화단을 조성하여 경관과 미관을 증진 - 차량통로 : 보강도블럭을 쌓아 단지와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여 차량에 의한 위험요소 제거								

5) 정비사업 시행계획 (변경 없음)

2. 관련서류

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 주택과(☎731-1406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끝.